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8. 16 선고 2022가단199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2. 4. 8. 접수 제1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서희경

별지